

2016

한국철학회 정기총회

- 일 시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17:00 ~ 18:00
- 장 소 건국대학교 해봉 부동산학관 103호

사 단 법 인 한국 철 학 회

06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1010호
070-7762-7741 / 010-4763-7609 / kpa1004@gmail.com

■ 정기총회 식순 ■

사회: 이상헌 사무총장

- 총회성원 확인
- 개회 선언 및 개회사
- 2015~2016 한국철학회 사업 보고
- 2015년도 한국철학회 결산 및 감사 보고
- 안건 토의
- 차차기 회장 선출
- 감사 선출
- 이사 선임
- 차차기 회장 당선 인사
- 신임 회장 취임 인사
- 회장 이임사
- 공지사항
- 폐회 선언

■ 2015~2016 한국철학회 사업 보고 ■

[일반 현황]

1. 회원 현황(2016년 5월 22일 기준)

개인회원: 562명(종신회원 201명, 일반회원 355명, 명예회원 6명)

기관회원: 51개

2. 유효 회원(2016년 5월 22일 기준)

2015년 이후 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개인 회원 85명

(상기 85명 중 2015,16년 연회비를 납부한 개인 회원 34명 - 정회원)

종신회원 175명 - 정회원

[2014~2015 임원진 명단]

회장	백종현(서울대)
직전회장	이좌용(성균관대)
차기회장	이진우(포항공대)
부회장	김교빈(호서대) 김학권(원광대) 안세권(계명대)
연구위원장	강상진(서울대)
편집위원장	하중호(고려대)
대외협력위원장	김준걸(경상대)
발전위원장	이병덕(성균관대)
재무위원장	강진호(서울대)
여성철학위원장	김선희(이화여대)
생명윤리위원장	최경석(이화여대)
철학올림피아드위원장	박정하(성균관대)
통일한국철학위원장	이상훈(대진대)
열암철학상운영위원장	손동현(성균관대)
감사	김석수(경북대) 정원섭(서울대)
사무총장	이상헌(세종대)
사무국장	전세라(고려대)

■ 주요 사업 활동 ■

2015. 8. 26 낮 12시 집행위원회 (참석인원 13명, 위임장 2명)

- 2015-16 학회 구성, 운영 방식, 세입 세출안 심의.
- 종신회원 신규 가입 확대를 통해 학회 참여도 높이는 동시에 세입 확충
- 학회의 자산 운용에 관한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
- 열암철학상 시행 세칙 변경(시상 시기를 4~7월 -> 3월로 변경) 논의
- 춘계학술대회 개최 논의

2015. 9. 19 낮 12시 이사회 개최 (참석인원 6명)

- <철학> 발전 방향 논의
- 투고자들에게 심사료와 게재료 등이 부담.
- 심사료 체계 유지하되, 게재료 체계 변경.
- <철학>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 도입

2016. 1. 21 낮 12시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1차 모임 (참석인원: 3명)

-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선정

2016. 3. 18 낮 12시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 발족 회의 (참석인원: 6명)

- [열암철학상] 심사 기준 및 시상 계획 논의
-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 [열암철학상],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안 논의

2016. 4. 22 낮 12시 이사회 개최 (참석인원: 5명)

- 학회의 모든 규정을 다음의 세 종류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논의(정관> 시행세칙> 규정)
- 현재 회계연도와 결산보고, 총회 승인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바로 잡기 위해서는 총회 일정과 임원의 임기 조정 등이 필요.
- 차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논의

2016. 5. 14 낮 12시 이사회 개최 (참석인원: 5명)

- [춘계학술대회] 준비 상황 점검.
- 총회 개최 시기, 회장 임기, 차기 회장 임기 조정 등 관련 규정 개정안 논의.
- 결산보고 및 예산 승인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
- 차기 이사진 선임 논의.

[종신회원] 13명 신규 가입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우수연구도서 심사위원 등 각종 추천 업무 수행.

■ 위원회별 사업 보고 ■

1) 사무국 사업 보고

- 임원 변경 승인(교육청) 및 법원 등기 완료,
- 월 2회 학회 소식 모아 홈페이지 업로드 및 전체 메일 발송.
- <철학> 과월호(2014~2015) 전수조사를 거쳐 미입금된 심사료, 연회비, 게재료 청구
- 만기 적금 재예치
- 대표자 변경에 따른 고유번호증 재발급(서초세무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신청(2015/10/15) -> 지원 선정(2015/12/28: 5,952,000원 지원)
- 2016 예산서 제출(교육청)
- 2015결산 보고(국세청, 교육청)
- 국내 주요 대학 철학과 사무실에 한국철학회 종신회비 및 게재료 변경 사항 공지 협조 공문 발송.
- [열암철학상] 관련 정관변경 승인 및 법원 등기 완료.
-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지원 신청(3/15) -> 지원 학회로 선정(5/10)

2) 편집위원회 사업 보고

- 8/31 <철학> 124집 발행, 11/30 <철학> 125집 발행,
2/28 <철학> 126집 발행, 5/31 <철학> 127집 발행(예정)
- 8/25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지 결과 발표 ▶ <철학> 우수학술지 탈락.
- 8/31 우수학술지 재심 요청 공문 발송 ▶ 10/20 우수학술지 재심 신청 건에 대한 회신 수령
▶ 11/5 연구재단 앞으로 반론 공문 재발송 ▶ 12/3 반론 공문에 대한 연구재단 회신 수령
▶ 12/14 연구재단 앞으로 재심 신청건에 대한 반론 공문 재발송 ▶ 2/24 연구재단 담당
자와 여러 차례 통화 후 회신 대기 중
- <철학> 발전을 위해 게재료 변경.
심사료 체계 그대로 유지. (투고자: 3만원 납부, 학회: 3만원 부담)
게재료의 경우 전임/비전임)을 구분, 비전임 : 게재료 ×, 전임 : 면당 5000원의 게재료 부담
(단, 연구재단 또는 학교의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 일괄 40만원 부담)
- 8/30 DBPIA와 DOI대행 계약 체결
- [한국연구재단] 신규 학술지 지원 사업 신청 ▶ 지원 학술지 선정
-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지원 신청 ▶ 지원 학회 선정 ▶ 논문 투고 홈페이지 준비 중.

1) 비전임/전임의 구분은 사학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3) 철학올림피아드 위원회 보고

- 2016' 제 24회 국제철학올림피아드가 벨기에 겐트에서 5월 12~16일 개최됨.
- 각국에서 대표로 2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김의형(청심 국제고), 최정호(서울국제학교) 두 학생이 참여.
- 두 학생 모두 금상(1등상) 수상. 총 3명의 금상 수상자 가운데 우리 학생이 2명 선정됨.
- 참가학생 전원이 금상을 수상한 것은 국제철학올림피아드 역사상 처음이라고 함.

4) 열암철학상운영위원회 보고

- 3/18 [열암철학상운영위원회] 발족회의를 통해 아래의 사항이 결정됨.
- 열암철학상의 운영을 위해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를 한국철학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 원활한 운영을 위해 4인의 임원(회장, 차기회장, 편집위원장, 사무총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에 5인 이상 11인 이하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다.
-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철학 분야의 저서나 논문을 대상으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 수상자 선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시상 시기 및 시상 내용

		비고
시상 시기	3월(격년)	3월 셋째주 금요일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시상 인원	1명	
시상 내용	상장, 상금(300만원)	

-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 명단

위원장		손동현	2016. 3~2018. 3
위원	당연직	백종현	8/1기준으로 당연직 위원 변경
위원	당연직	이진우	
위원	당연직	하종호	
위원	당연직	이상현	
위원		조은수	2016. 3~2018. 3
위원		허남진	2016. 3~2018. 3
위원		박윤창	2016. 3~2018. 3

■ 2015년도 한국철학회 결산 및 감사 보고 ■

별표 4

재무상태표(대 차 대 조 표)

당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비 고
(자 산)	금 액		금 액		
1. 기본재산 (현금, 부동산 등)	770,000,000		770,000,000		
2. 보통재산	57,322,274		63,411,323		
3. 선납세금					
4. 비품					
5. 수익사업부					
자산총계	827,322,274		833,411,323		
(부 채)					
1. 미지급금					
2. 예수금	49,50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채총계	49,500				
(자 본)					
1. 기본재산	770,000,000		770,000,000		
2. 증자준비금					
3. 이익잉여금					
가. 이월이익잉여금	56,186,824		63,411,323		
나. 증자준비금					
자본총계	827,322,274		833,411,323		
부채와 자본총계	827,322,274		833,411,323		

한국철학회 감사보고서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단위: 원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전기이월①	63,411,323	이월금			
회비	개인연회비	19,351,200	사무비	사무실 관리 및 운영비	2,091,500
	기관연회비	450,000		통신비	761,780
	논문게재료	3,824,000		사무용품비	311,060
	과실소득	6,699,631		기타잡비(화환, 근로기, 이체수수료, 감사패 등)	752,990
기타수입	학회관리비	0	세금	재산세, 법인세, 법인등기, 세무사 기장, 세무조정비	6,889,810
	기타	470,800	소계③		10,807,140
			학술지	『철학』, 심사, 편집, 제작 및 발송(119집-122집)	21,867,410
			회의비	이사회, 집행위원회 회의비	1,156,600
		1,024,600	목적사업비	철학올림피아드	3,000,000
				학술대회지원	8,293,970
				학술교류비	1,197,010
				일반교류비	3,600,000
기부금	(주)사회평론	3,000,000	소계④		39,114,990
	법무법인 해우	3,000,000	총지출⑤	49,922,130	③+④
	한국연구재단	5,952,000	차기이월⑥	56,186,824	(①+②)-⑤
	(주)머니투데이	10,000,000	기본재산	정기예금	670,000,000
소계②	(주)사회평론	3,000,000		부동산	100,000,000
			소계⑦		770,000,000
총계①+②		106,108,954	총계⑥+⑦		826,186,824

상기의 내용이 관련 영수증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되지 않음을 감사함



감사: 정 원 섭

감사: 김 석 수

■ 안건 토의 ■

□ 이사회(2016. 5. 14) 의결 사항 □

- ① 현재 회계연도와 결산보고, 총회 승인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정관 변경을 통해 총회 일정과 임원의 임기를 변경한다.
- ② 현 정관의 세입 세출 예산 항목을 표준 정관에 준하여 보완한다.
- ③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회의 모든 규정을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정관 > 시행세칙 > 규정

1. 정관(18조, 36조 및 관련 보칙), 시행세칙(3장 4조 및 관련 부칙) 개정

1) 정관 18조(총회 소집 시기)

현행	개정안	비고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5,6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리가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리가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시행세칙 3장 4조 및 관련 부칙(회장의 임기)

현행시행세칙	개정안	부칙
제3장 임원 제4조(회장) 회장은 정관 제 13조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①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임원 제4조(회장) 회장은 정관 제 13조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①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2016. 8. 1. 취임하는 회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3) 정관 제36조 (결산보고 및 예산 승인)

현행	개정안	비고
제36조 (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6조 ①(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②(결산보고)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2. 정관> 시행세칙> 규정 용어 통일 안

- 학회의 모든 규정을 다음의 세 종류로 구분(정관 / 시행세칙 / 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
한국철학회 정관 - 한국철학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위원회 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사무국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회장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한국철학회 정관 -한국철학회 운영 시행세칙 -회장 선출 규정 -위원회 별 규정 -열암철학상 규정 -사무국 규정	정관 제3장 16조(위원회 설치)①본회는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 분과연구회를 두며 <u>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u>

3. 기타

■ 2017~2018 한국철학회 회장 선거 ■

■ 후보자 이력 및 추천의 변 ■

1. 김교빈(호서대)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 이 좌 용

선거관리위원: 이상헌, 정원섭, 이원봉, 정연재

1. 한국철학회 회장 후보자 이력서

인 적 사 항

성 명 : 김 교 빈 (金 敎 斌)

생년월일 : 1953년 11월 9일 출생지 : 서울특별시

본 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군동 60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0차아파트 339동 706호

학 력

1972년 2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1978년 2월 25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유학과 졸업

1983년 8월 25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철학과 석사과정 졸업
(문학석사 / 학위논문: 회재(晦齋)철학사상연구)

1992년 8월 25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철학과 박사과정 졸업
(철학박사 / 학위논문: 霞谷哲學思想에 관한 연구)

경 력

1985년 3월 - 현재	호서대학교 교수
1991년 3월 - 1993년 2월	호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1995년 4월 - 1998년 8월	교수신문 편집위원
2000년 3월 - 2002년 2월	호서대학교 교무처장
2002년 3월 - 2003년 8월	호서대학교 기획처장
2004년 1월 - 2005년 1월	뉴욕주립대학교 방문교수
2006년 2월 - 2008년 2월	문화콘텐츠대학원 원장
2008년 3월 - 2009년 7월	호서대학교 예체능대학 학장
2012년 9월 - 2013년 6월	빈 대학교 방문교수

학회 관련 경력

1997년 9월 - 2001년 8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장
2000년 7월 - 2002년 9월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2002년 9월 - 현재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2002년 11월 - 2005년 2월	인문콘텐츠학회 회장
2005년 6월 - 2006년 6월	한국철학회 연구위원장
2011년 8월 - 2012년 7월	한국철학회 부회장
2015년 8월 - 현재	한국철학회 부회장

연구 목록

논문류

- 회재(晦齋)철학사상연구 1983년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서화담(徐花潭)의 기(氣)철학에 대한 고찰 1984년 동양철학연구 제 5 집
- 본체론과 심성론을 통해 본 주자(朱子)의 격물치지(格物致知) 이해 1985년 동양철학연구 제 6 집
- 율곡(栗谷)철학에서의 필연성(必然性)과 가변성(可變性)에 대한 연구 1987년 유교사상연구 제 2 집
- 하곡(霞谷)철학의 구조연구 I 1989년 호서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제 8집
- 하곡철학의 구조적 이해 II 1990년 호서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제 9집
- 신과학운동과 동양사상 1991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
- 16세기 주자학-퇴계와 율곡의 진보성과 반동성 1991년 역사비평 14호
- 하곡철학의 구조적 이해 III 1991년 호서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제 10집
- 비판계승론의 문화전략 (공동연구) 1992년 시대와 철학 4집
- 霞谷哲學思想에 관한 연구 1992년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맹자와 순자의 성설 비교 1992년 한국공자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남북철학계의 시각차와 북한 철학계의 변화에 대한 검토 1992년 호서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11집
- 霞谷 理氣論의 구조에 관한 연구 1993년 유교사상연구 제 6집
- 동양철학에서 본 정보화사회와 개인의 문제 1993년 한국동양철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기술정보화시대의 인간문제 현암사 1994년 11월)
- 새로운 패러다임 : 기(氣) 1993년 11월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현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문학 백의 1994년 2월)
- 문화열 논쟁과 중국식 사회주의 1994년 2월 28일 계간 사회철학 봄(2호)
- 북한철학계의 전통철학 연구 경향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1994년 시대와 철학 9호
- 오리선생문집 해제 1995년 3월 30일 여강출판사
- 맹자와 순자의 성론 비교 1995년 4월 한국공자학회, 이애희 외 『공자사상의 계승 1』, 열린책들
- 동양철학에서 본 인간해방 1995년 5월 13일 한국철학회 1995년 봄 정기학술발표회
(해방의철학 한국철학회편 철학과현실사 1996년 5월 30일)
- 민중의 철학사상과 실천- 전통철학 계승과 극복으로서의 동학사상(공동연구) 1995년 시대와 철학 10호
- 막스 베버의 유교관과 공자관 검토 한국공자학회 1995년 공자학 2집
- 해방 이후 한국에서의 중국철학 연구동향과 전망 중국학회 1995년 8월 제 15차 중국학 국제학술대회(중국학보 36집 1996년)
- 大學說을 통해 본 霞谷 鄭齊斗의 經學思想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95년 제5회 동양학 국제학술회의(대동문화연구원 제5회 동양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995년)
- 동양철학에서 본 자연주의 : 기의 패러다임 소흥렬교수 지음 『문화적 자연주의』 출판기념 학술제(1996년 9월 21일 발표논문집)
- 분단한국과 의병정신 1996년 9월 6일 안동의병 의거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실심으로 살아간 양명학자들 - 강화학과 1996년 12월 1일 『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한국사상사 연구회편저
- 해제 경학자료집성 96권 성균관대학교 1996년 12월
- 동아시아의 양명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97년 5월 25일 철학연구 40집

주희의 격물치지를 통해 본 동양적 과학정신의 특성 1997년 8월 30일 과학사상 22호 (7월 4일 과학철학회 심포 발표논문)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월례발표회 1998년 6월 10일 북한의 철학

북한의 철학 호서대 철학과 콜로퀴움 1998년 11월 3일

하곡 정제두의 도덕주체와 도덕적 자연이해 1998년 11월 5일 동양철학의 자연과 인간

남북한 철학의 비교와 반성 1998년 11월 10일 제3회 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심포지엄 “21세기 한민족 공동체의 문화 통합 및 발전 방향”

동아시아 근대 민중운동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 1999년 6월 19일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제 15회 학술발표회 「역사 속의 유토피아 사상 - 2000년대를 향한 반성」 시대와철학 18호 (1999년)

1999년 7월 9일 대동문화연구원 증점과제 학술발표회 「유교문화와 한국사회」 3차 학술발표회 ‘유교와 한국사회의 근대적 전환’ 에서 『유교와 민중운동의 관련양상』 발표

1999년 7월 13일 한국과학철학회 학술발표회 「황제내경의 이론체계에 대한 검토」 발표

유교와 민중운동의 관련양상 1999년 7월 동양철학 11집 한국동양철학회

조선후기 주자학과 양명학의 논쟁 1999년 12월 30일 시대와철학 19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양명학과 생명사상 2000년 2월 10일 제 34차 한국동양철학회 정기학술회의 학술발표 (2000년 9월 20일 동양철학 13집 한국동양철학회)

우리 철학의 길 2000년 5월 제20회 학술발표회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19집, 2000년)

열암의 철학 역경을 통해 본 열암철학의 구도 2001년 3월. 현실과창조 3집, 열암사상기념사업회

남북한 유학연구의 비교와 전망 2001년 9월 오늘의 동양사상 5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A Comparison between Confucianism and Donghak 2002년 8월 East Asian Studies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콘텐츠 관련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2003년 12월 인문콘텐츠 2호 인문콘텐츠학회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 세계화 전략’ 과 인문학의 역할 2005년 6월 인문콘텐츠 5호 인문콘텐츠학회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2005년 12월 인문콘텐츠 6호 인문콘텐츠학회

馬王堆 帛書의 연구경향 검토 2006년 3월 시대와철학 17-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중장기 로드맵 수립 2006년 4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하곡정제두의 주체성과 창조정신 2006년 8월 유학연구, 14권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한국의 동아시아 공동체론 2006년 10월 오늘의 동양사상 15권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죽음에 대한 유교의 이해 2006년 11월 철학연구 75권 철학연구회

朝鮮後期の 주자학과 양명학 논쟁 2007년 3월 양명학 19호 한국양명학회

돌봄과 치유에 대한 유가 정서의 철학적 기초 2007년 12월 의철학연구, 4권 의철학회

한국인문학의 자기성찰과 혁신 공동연구 2008년 12월 한국연구재단

전통무예 태격의 정체성확립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2008년 12월 김제시

마보 노무현과 살바도르 아옌데 2009년 6월 시대와철학, 20권 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황제내경 - 기철학과 전통의학의 만남 2009년 10월 오늘의 동양사상, 20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명제 윤증과 하곡 정제두의 교유 2010년 3월 시대와철학, 21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동아시아 근대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0년 12월 시대와철학, 21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예치주의의 형식성을 통해 본 동아시아의 근대성 검토 2012년 3월 시대와 철학 23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저 서

조선조 유학사상의 탐구	공저	1988	여강출판사
산다는게 무언가	공저	1991	일선
동양철학에세이	공저	1993	동녘
국민윤리(방송대 교재)	공저	1993	서울대출판부
독서전략	공저	1993	삼화출판사
현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문학	공저	1994	백의출판사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공저	1995	예문서원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1995	한길사
강좌한국철학	공저	1995	예문서원
생활의 길잡이 (3-1)	공저	1996년 3월	교육부
생활의 길잡이 (3-2)	공저	1996년 9월	교육부
이야기 한국철학 1,2,3권	공저	1996년 4월	폴빛출판사
생활의 길잡이 5학년	공저	1997년 3월	교육부
우리들의 동양철학	공저	1997년 2월	동녘
중국철학개론	공저	1998년 7월	방송대 출판부
동양철학은 물질문명의 대안인가	공저	1998년 12월	웅진
중국의 종교와 사상	공저	2002년 7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한국철학에세이		2003년 1월	동녘
동양철학과 한의학	공저	2003년 4월	아카넷
기학의 모험	공저	2004년 4월	들녘
한국의 사상	공저	2004년 2월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의 사상가 10인 - 하곡 정제두	편저	2005년 6월	예문서원
21세기의 동양철학	공저	2005년 12월	을유문화사
세계의 고전을 읽는다 2	공저	2005년 12월	휴머니스트
한국유학사상대계 3	공저	2005년 2월	한국국학진흥원
동양철학에세이 - 개정증보판	공저	2006년 2월	동녘
문화콘텐츠입문	공저	2006년 3월	북코리아
동양철학산책	공저	2006년 8월	방송대출판부
박지원의 열하일기		2006년 12월	삼성출판사
한국철학스케치 1, 2	공저	2007년 2월	폴빛
전통청바지	편저	2007년 2월	웅진
가치청바지	편저	2007년 2월	웅진
박제가의 북학의		2007년 7월	삼성출판사
한국철학에세이 - 개정증보판		2008년 5월	동녘
성학집요		2009년 4월	웅진
한국문화와 콘텐츠	공저	2009년 9월	채륜
이언적		2010년 6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한국학의 즐거움	공저	2011년 9월	휴머니스트

화담집		2011년 12월	풀빛
유학, 시대와 통하다	공저	2012년 9월	자음과모음
동양철학에세이 2		2014년 5월	동녘
정신의 풍경에서 노닐다	공저	2014년 8월	도서출판 전망

역 서

중국고대철학의 세계	공역	1991	죽산
중국의학과 철학	공역	1991	여강출판사
기의 철학	공역	1992	예문지
현대 중국의 모색	공동편역	1992	동녘
역의 철학	공역	1993	예문지
중국 고대의 논리	공역	1993	동녘
동양의학은 서양과학을 뒤었을까	공역	1996년	보광제
몸으로 본 중국사상	공역	1999년	소나무
강설황제내경	공역	2009년	청홍

2. 한국철학회 회장 후보자 추천의 변

김교빈 교수는 학계의 리더로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야에서 탁월한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한국의 철학계 뿐만 아니라 학계 전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분으로 한국철학회를 이끌어가는 회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이에 회장 후보로 적극 추천하고자 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추천인 일동

추천인: 최일범(성균관대 교수),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서유석(호원대 교수), 김혜숙(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정하(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이상훈(대진대 교수)

3. 한국철학회 회장 후보자 출마의 변

한국철학회 제 48대 회장 후보로 나선 호서대학교 김교빈교수입니다.

먼저 저를 후보로 추천해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 여러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철학회 회장이라는 큰 짐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철학계의 발전에 이바지 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1953년 결성된 한국철학회는 초대 고흥곤선생님부터 현 회장이신 백종현선생님에 이르기까지 한국철학계 변화 발전의 중심에 서 있어 왔습니다.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철학 또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겠으나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학회를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의 전통을 받들어 대한민국 철학계 발전의 먼 미래를 위한 벽돌 한 장의 역할이라도 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는 한국철학회의 활성화입니다.

한국철학회는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이 침체된 지 오래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로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외적 원인 뿐 아니라 내적인 원인도 적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회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한국철학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한국철학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도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며 학문 후속세대들의 발표 기회 또한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기반을 둔 다른 철학회나 세부 학문분야를 탐구하는 분과학회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철학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는 인문학의 토대인 철학의 활성화와 학문 후속세대의 기반 마련입니다. 연구자의 역할은 연구와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구의 경우 물론 개인의 목표의식과 역량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연구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재단의 철학 분야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수의 경우 인성이 강조되면서도 교양교육에서 소외되는 철학 관련 강좌에 대한 연구재단의 지원 확대를 강구해 볼 것이며 아울러 교육감들과의 협조를 통해 재량교육 시간을 활용한 철학 교육이나 방과후 철학캠프 등을 만들어 철학연구자들과 청소년들이 만나는 자리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후자는 청소년들에게 철학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강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는 철학과 사회의 소통 강화입니다. 사회가 철학 연구자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 수 있는 논리를 바라지만 철학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기도 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정하기도 합니다. 철학이 사회에서의 존재 의미를 잃는다면 더 이상 설 자리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의 중요한 아젠다를 읽어내고 이를 철학적인 문제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젠다위원회를 만들어 연구자들과 일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아젠다를 끌어내고 이를 철학자들의 연구 주제로 확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대학에서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철학과목이 기피대상이 되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오히려 철학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중 강좌를 끌어 내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보해 내는 것도 방안이 될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한국철학회가 해야 할 일은 많을 것이며 회장 임기 1년 동안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임기는 1년이어도 법인이사와 집행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차기 회장 기간과 직전회장 기간을 합쳐 모두 3년의 봉사 시간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회장과 차기회장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추천해 주신 선후배님들께[감사드리며 학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5월 5일

한국철학회 제 48대 회장 후보 김 교 빈

■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

■ 회장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

제1조 (자격) 후보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회장 후보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2조 (방식)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직접 및 비밀 투표로 선출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 2인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한다.

제3조 (선거권) 선거권은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회장은 총회개최일 30일 전까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선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 (선거 관리)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체 없이 회장 선출에 관한 공지를 하여 총회 개최 15일 이전까지 후보 등록을 받도록 하며, 총회 소집이 공고될 때 후보 등록 사항을 함께 공지한다.

② 총회에서 신임회장의 당선 확정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종료된다.

제6조 (후보 등록) 회장 후보는 자원자의 의사 표명 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그 자격을 얻는다. 단, 자원자 또는 추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총회 개최 15일 이전) 회장 후보에 관한 자원 혹은 추천의 의사를 서면(또는 e-mail)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제출서류: 후보자의 이력서, 공약 등 자원 또는 추천의 변)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인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철학의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철학회(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KPA로 약칭)”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 연구활동과 발표회 및 강연회
 2. 학회지의 발간 및 그 밖의 철학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발간
 3. 분과별 연구 활동
 4.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5. 학술상 시상
 6. 그 밖에 철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학술활동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업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의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수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철학을 전공하거나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본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 ② 본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 정관의 시행세칙에 의거 명예회원과 준회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법인의 정관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위원회

-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감사 2인. 단, 이사 중 회장 1인을 두고 차기회장, 직전회장을 둘 수 있다.
 - ② 본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 정관의 시행세칙에 의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1년,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은 이사장이 된다.
 - ③ 본회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화를 위하여 차기회장을 1년 전에 선출한다.
 - ④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3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4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의 유고 혹은 궐위 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독하는 일
 2. 이사회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독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에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학술위원회, 집행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발전위원회, 여성철학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재무위원회, 한국철학회 기금위원회, 분과연구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본회 산하에 한국철학자연합대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그밖에 이사회에의 결의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의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5, 6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리가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 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 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거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수증,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 1 항 및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 (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 (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를 일간 서울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김 여 수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1년
이사	이 영 호	서울시 도봉구 창2동	1년
이사	정 영 도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1년
이사	김 팔 곤	전북 익산시 신동	1년
이사	김 영 정	서울시 양천구 목동	1년
이사	이 길 우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1년
이사	김 형 철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1년
이사	백 종 현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1년
이사	손 동 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2년
이사	이 삼 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년
이사	엄 정 식	서울시 양천구 목동	2년
이사	김 규 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년
이사	박 영 식	서울시 양천구 목6동	3년
이사	신 일 철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3가	3년
이사	이 헌 조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년
감사	장 옥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1년
감사	유 기 상	서울시 관악구 봉천1동	2년

부 칙

1. 이 개정 정관은 200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정관은 200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인 교육청의 허가를 얻은 후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1. 기본재산 총괄표

(1995년 11월 4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현금 (정기성예금)	1계좌	50,000,000원	외환은행 154-16-02706-1
합계	1계좌	5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

(1995년 11월 4일 설립허가일 현재 기준)

재산명	종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현금	정기성예금	1계좌		50,000,000원	외환은행 154-16-02706-1
합계		1계좌		50,000,000원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1. 기본재산 총괄표

(2016년 3월 현재기준)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정기예금 부동산	6계좌 1	670,000,000원 100,000,000원	
합계		77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16년 3월 현재 기준)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정기예금	우리은행				70,000,000원	1020-416-522957
	국민은행				200,000,000원	453815-13-46134-01
	우리은행				100,000,000원	1020-718-640578
	우리은행				100,000,000원	1020-818-634269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303-1545-4303-61
	국민은행				100,000,000원	411415-13-17378-01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 기림오피스 텔 10층 1010호	업무 시설	건물 28.3 토지 5.97	100,000,000원	
합계					770,000,000원	

■ 2015~2016 한국철학회 임원 및 전체 위원회 ■

법인이사

백종현(이사장, 서울대), 이좌용(직전회장, 성균관대), 이진우(차기회장, POSTECH),
강상진(연구위원장, 서울대), 하종호(편집위원장, 고려대)

법인감사

김석수(경북대), 정원섭(서울대)

임원

회 장: 백종현(서울대)

부 회 장: 김교빈(호서대), 김학권(원광대), 안세권(계명대)

사무총장: 이상헌(세종대)

집행위원회

위 원 장: 백종현 회장

이좌용 직전회장, 이진우 차기회장, 안세권 부회장, 김교빈 부회장, 김학권 부회장,
강상진 연구위원장, 하종호 편집위원장, 이병덕 발전위원장, 김준걸 대외협력위원장,
김선희 여성철학위원장, 최경석 생명윤리위원장, 이상훈 통일한국철학위원장,
강진호 재무위원장, 박정하 철학올림피아드위원장, 이상헌 사무총장
(이외 회장이 임명한 자)

학술위원회 (법인이사와 학술이사로 구성, 학술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1/3은

지역학회장의 추천으로 구성)

위 원 장: 백종현 회장

연구위원회 (당연직: 회장, 부회장 1인, 발전위원장)

위 원 장: 강상진(서울대)

김교빈(호서대), 김명석(성균관대), 백종현(서울대), 이병덕(성균관대),
이승종(연세대), 이장희(경인교대), 이종성(충남대), 이창우(가톨릭대),
장은주(영산대), 조남호(국제뇌종합대), 한자경(이화여대)

편집위원회 (당연직: 회장, 부회장 1인, 연구위원장)

위 원 장: 하종호(고려대)

강상진(서울대), 김병환(서울대), 김세화(이화여대), 김양현(전남대), 김학권(원광대), 박치완(한국외대), 백종현(서울대), 유성선(강원대), 이재영(조선대), 이종성(충남대), 이진우(POSTECH), 이현복(한양대), 임승택(경북대), 주광순(부산대), 황설중(대전대), Paul Cortois(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Chang-Seong Hong(Minnesota State University-Moorhead), Halla Kim(University of Nebraska-Omaha), Noburu Notomi(Keio University), Jin Y. Park(American University), Jörg Plassen(Ruhr-Universität Bochum), Sun-Joo Shin(Yale University), Byeong-uk Yi(University of Toronto)

대외협력위원회 (당연직: 회장, 부회장 1인)

위 원 장: 김준걸(경상대)

김한걸(Temple University), 도승연(광운대), 백종현(서울대), 서대원(충북대), 송지우(서울대), 안세권(계명대)

발전위원회 (당연직: 회장, 부회장 1인, 대외협력위원장, 연구위원장)

위 원 장: 이병덕(성균관대)

강상진(서울대), 김교빈(호서대), 김도식(건국대), 김선희(이화여대), 김준걸(경상대), 김 신(한국외대), 박은진(학술단체협의회), 백종현(서울대), 안세권(계명대), 양은석(전북대), 원만희(성균관대), 유원기(계명대), 최원배(한양대), 홍병선(중앙대)

여성철학위원회 (당연직: 회장, 부회장 1인)

위 원 장: 김선희(이화여대)

김세서리아(이화여대), 김애령(이화여대), 김학권(원광대), 김화경(경기대), 백종현(서울대), 신정원(한국예술종합학교), 양선숙(경북대), 이혜정(한국외대)

생명윤리위원회

위 원 장: 최경석(이화여대)

철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 원 장: 박정하(성균관대)

박연숙(숭실대), 이지애(이화여대), 이진남(강원대), 전대석(고려대), 조광제(철학아카데미), 최한빈(백석대), 한기호(성균관대), 현남숙(가톨릭대)

재무위원회

위 원 장: 강진호(서울대)

통일한국철학위원회

위 원 장: 이상훈(대진대)

강상진(서울대), 김성민(건국대), 김재현(경남대), 김준걸(경상대), 김학근(목포대),
백종현(서울대), 양선숙(경북대), 이병덕(성균관대), 이진우(POSTECH),
이좌용(성균관대), 장동익(공주교대)

열암철학상운영위원회 (당연직: 회장, 차기회장, 편집위원장, 사무총장)

위 원 장: 손동현(성균관대)

박윤창(성균관대), 백종현(서울대), 이상현(세종대), 이진우(포항공대),
조은수(서울대), 하중호(고려대), 허남진(서울대)

사무국장/편집간사: 전세라(고려대)

■ 학회 연락처 ■

06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1010호

사무국 : 070-7762-7741 / 010-4763-7609 / kpa1004@gmail.com

편집위원회 : 010-4668-2391 / kpaeditor@gmail.com